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-7호

우편법시행령 제7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-30호(우체국택배 인터넷 접수할인에 대한 적용요건 및 할인요금)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.

2014년 1월 21일

우 정 사 업 본 부 장

우체국택배 인터넷 접수할인에 대한 적용 폐지에 관한 고시

1. 폐지이유

이 우체국택배(개별택배) 인터넷 접수 할인요금에 대한 별도 존치 시킬 정책적 필요성이 없어 동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

부 칙

이 고시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